

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』 일부 개정 조례안



성 북 구
(의약과)

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』 일부 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5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3년 9월

제출자 : 성북구보건소장

1. 제안이유

지역보건법 제34조(과태료)제1항 신설 및 동법 제3항 개정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안」 및 [별표]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개정 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역보건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(안 제1조~제3조)

나. 「지역보건법」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(안 별표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< 지역보건법 >

제34조(과태료)

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

2.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나. 협의사항

- 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 :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(PHIS)정보·자료 이용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 첨부)

라. 기타

1)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2023. 6. 22. ~ 2023. 7. 12. (20일간)
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3)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4) 부패/인권/성별/아동 영향 평가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제외대상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평가대상 아님

5) 법제심사 결과 : 검토 의견 반영

구분	검토의견	반영여부	반영내용
법제심사	조례안 별지의 [별표] 및 신·구조문대비표 [별표] 서식 중 과태료 부과금액 숫자 표기 시 천단위로 십표 표기	반영	- 조례안 별지 [별표] 천단위로 십표 표기 - 조례안 신·구조문 대비표 [별표] 과태료 부과기준 천단위로 십표 표기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
일부 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”을 “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3항”
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법 제34조제2항”을 “법 제3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법 제34조제1항”을 “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 부과기준(제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각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부과금액(단위 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	법 제34조 제1항	1,000	2,000	3,000
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, 예방접종,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	법 제34조 제2항제1호	100	200	300
법 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	법 제34조 제2항제2호	100	200	300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과태료는 「지역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</p> <p>제3조(과태료 부과기준)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---- ----- ----- 제34조제3항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과태료 부과기준)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----- -----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] 과태료 부과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 반 사 항</th> <th rowspan="2">근 거 법 령</th> <th colspan="3">부과금액(단위 : 만원)</th> </tr> <tr> <th>1차 위반</th> <th>2차 위반</th> <th>3차 위반 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법 제23조</td> <td style="color: red;">법 제34조 제1항 제1호</td> <td>100</td> <td>200</td> <td>300</td> </tr> <tr> <td>법 제29조</td> <td style="color: red;">법 제34조 제1항 제2호</td> <td>100</td> <td>200</td> <td>3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위 반 사 항	근 거 법 령	부과금액(단위 : 만원)	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 이상	법 제23조	법 제34조 제1항 제1호	100	200	300	법 제29조	법 제34조 제1항 제2호	100	200	300	<p>[별표] 과태료 부과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반사항</th> <th rowspan="2">근거법령</th> <th colspan="3">부과금액(단위 : 만원)</th> </tr> <tr> <th>1차 위반</th> <th>2차 위반</th> <th>3차 위반 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color: blue;">법 제22조 제3항</td> <td style="color: blue;">법 제34조 제1항</td> <td style="color: blue;">1,000</td> <td style="color: blue;">2,000</td> <td style="color: blue;">3,000</td> </tr> <tr> <td>법 제23조</td> <td style="color: blue;">법 제34조 제2항 제1호</td> <td>100</td> <td>200</td> <td>300</td> </tr> <tr> <td>법 제29조</td> <td style="color: blue;">법 제34조 제2항 제2호</td> <td>100</td> <td>200</td> <td>3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위반사항	근거법령	부과금액(단위 : 만원)	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 이상	법 제22조 제3항	법 제34조 제1항	1,000	2,000	3,000	법 제23조	법 제34조 제2항 제1호	100	200	300	법 제29조	법 제34조 제2항 제2호	100	200	300
위 반 사 항			근 거 법 령	부과금액(단위 : 만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차 위반	2차 위반		3차 위반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3조	법 제34조 제1항 제1호	100	20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9조	법 제34조 제1항 제2호	100	20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반사항	근거법령	부과금액(단위 : 만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2조 제3항	법 제34조 제1항	1,000	2,000	3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3조	법 제34조 제2항 제1호	100	20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9조	법 제34조 제2항 제2호	100	20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·
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
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별표에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사항으로
비용 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제2항 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.

4. 작성자

의약과장 김 경 희